

제429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1월20일(목)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8)
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9)
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6)
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4)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4)
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4)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9)
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6)
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6)
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8)
1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9)
1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5)
1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1)
1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6)
1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6)
1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4)
1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4)
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3)
1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8)
2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7)
2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39)
2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54)

상정된 안건

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8) 2
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9) 2
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6) 2

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4)	2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4)	2
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4)	2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9)	2
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6)	2
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6)	3
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8)	3
1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9)	3
1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5)	3
1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1)	3
1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6)	3
1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6)	3
1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4)	3
1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4)	3
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3)	3
1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8)	3
2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7)	3
2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39)	3
2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54)	3

(14시02분 개의)

○소위원장 임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8)**
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9)**
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6)**
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4)**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4)**
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4)**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9)**
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6)**

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6)
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8)
1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9)
1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5)
1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1)
1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6)
1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6)
1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4)
1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4)
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3)
1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8)
2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7)
2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39)
2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54)

(14시03분)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13건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공연법 13건은 암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11월 18일 제2법안소위에서 같은 내용으로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공연법 수정안이 위원님들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을 문체부가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 팬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저희가 공연법 수정안을 13개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하자면 일종의 대안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안을 주로 많이 참조했고요. 이 안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의2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범위를 확대해서 입장권 등 판매업자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조치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

○양문석 위원 죄송한데 페이지를 좀 불러 주세요. 어느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러면 대체토론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자료 제4쪽입니다.

2번, 입장권 등 부정판매 금지행위 범위 확대 등에 대해서는 입장권 등 부정판매 금지 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입장권 등 판매업자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조치 의무를 규정하는 것에 동의하며 박수현 의원님 개정안으로 수정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부정판매 정의 조항은 현행법의 기준인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을 희망합니다. 지난 화요일 법안2소위에서도 현행법과 같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의결된 바 동일한 규율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지금 문체부가 각 의원님들의 안을 포괄적으로 반영해서 공연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합 조정 방향과 핵심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상세히 설명을 하나하나 한 건씩 해서 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암표 부정행위 금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맞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리고 두 번째가 티켓 사업자 등의 입장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 신설 그리고 세 번째가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의 접수·처리를 담당하는 신고기관 지정 신설, 신고포상금 지급 신설,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신설, 몰수·추징 신설, 과태료 부과 신설. 지금 이게 7건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러면 자료를 이 법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

○소위원장 임오경 문체부의 통합 조정안이잖아요, 이 7개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2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7쪽 3번, 신고기관의 지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을 담당하는 신고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박수현 의원님 안으로 수정하기를 희망하며 저희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신고포상금의 지급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입장권 등을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문체위 전문위원실 검토 내용처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조항의 위치가 타 입법례에서도 보통 보칙에 이런 포상금의 지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칙으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12쪽 5번, 입장권 등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 조치(과징금, 벌금, 몰수·추징, 형의

가중, 과태료)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박수현·박정하 의원님께서는 과징금을 부정판매 금액의 3배, 김재원 의원님께서는 5배 이하 금액으로 발의해 주셨는데 지난주 화요일 2소위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판매금액의 50배 이하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체부도 과징금 상한이 50배까지 가능하다면 암표 단속과 처벌에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인데, 국세기본법에 과세정보 제공 조항이 있는데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과세정보 제공 규정으로 수정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승래 의원님 개정안에서 3항으로 신설한 강제징수 절차 관련 조항은 과징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개정안에 포함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17쪽은 별칙조항입니다. 입장권 등을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한 자에 대한 별칙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별칙 규정은 박수현 의원님 개정안으로 수정하길 희망하고요. 이번 개정안에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제재를 강화한 만큼 별칙 규정을 강화하기보다는 현행 1000만 원 이하, 1년 이하 징역으로 유지하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서 제41조의 1호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의 내용을 신설하여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신고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몰수·추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장권 등을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은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취득한 이익의 몰수 및 가액 추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음 22쪽, 형의 가중입니다.

상습적인 입장권 등 부정판매에 대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 개정안에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해서 행정제재를 강화했으니까 형의 가중 조항 삭제를 희망합니다.

형별의 강화보다는 이익금 환수 및 징벌적 제재가 가능한 과징금 중심으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과태료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장권 등 판매자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내용은 삭제하고 현행 조항이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요일에 법안2 소위에서 논의된 국민체육진흥법에서도 과태료 부과가 삭제되어 현행 조항이 유지되었습니다.

다음, 부칙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님.

○**박수현 위원** 문체부의 수정안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두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입장권 등 부정판매 금지행위 범위 확대에서 문체부의 수정안은 부정판매의 정의에 ‘상습 또는 영업’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상습의 기준이 몇 번인지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횟수를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과징금에서 50배로 수정 동의를 하면서 2소위에서 정한 50배 기준과 맞추기 위한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법사위의 심의 과정에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철도사업법의 열차 운임·요금이 30배 부가운임을 부과한다고 하는 타법과의 충돌, 형평, 균형 이런 문제 때문에 법사위에서 이 문제가 지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대체로 그 두 가지 정도 우선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징벌적 과징금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는 3배, 5배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하시면서 이게 상당한 정도로 처벌 효과가 있어야 과징금이 효과가 있다, 암표를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50배로 됐는데, 박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배 과징금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그런데 지금 국민체육진흥법과도 같이 나가는 거라 형평은 맞춰야겠고.

그래서 여기서 논의해 주시면 따르겠고 전체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가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충설명 좀 드리고 싶습니다.

50배 하는 입법 선례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랑 산림조합법에 50배로 한 입법 선례가 있기 때문에 법사위 가도, 과태료이긴 합니다마는 50배라는 그 숫자는 분명히 입법 선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습에 대해서 몇 회인지 불분명한 걸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습관성을 기준으로 상습을 판별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것은 상습이다 아니다, 1회만 해도 상습이다, 3회를 해도 개인이 조금 한 거는 봐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다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습으로 가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판례가 이미 정립되어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판례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예.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임오경** 예.

○**조은희 위원** 10페이지의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는데 규정 관련해서 총칙과 보칙에 두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총칙에는 박수현 의원님 안이고 보칙에는 김선교 의원님 안인데요. 그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법의 실효적인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입법 관례적으로 보칙에다가 포상금 관련 규정을 주로 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상관없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연욱 위원 기본적인 수정 요구 취지를 저희는 공감하지만 약간 디테일한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향후 전체회의나 법사위에 넘어가서 어떤 식으로 조정될지는 지켜봐야 될 대목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부정구매도 문제지만 부정판매가 문제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최근에 논란이 됐던 티켓베이나 플랫폼 사업자도 문제가 되지만 이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관행적으로 당근이나 이런 일반적인 중고시장에서도 소액이지만—다수 건은 아니지만—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거기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사안들을 과연 얼마만큼 단속하고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래서 법에 지금 전산망을……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장 김진희 지금 2차 중고거래 시장이라고 하는 티켓베이나 당근, 번개장터 중에 티켓베이가 한 7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업자 의무 조치라고 해서 관리 조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표 거래에 대한 게시물이 등장했을 때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조치를 할 수 있게 의무화 규정을 이번에 따로 신설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의무화 조치라는 게 결국 개별적으로 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되지만 만에 하나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때 제재 조치라는 게 또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의무라는 게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장 김진희 그러니까 2차 판매 시장들도 사실 암표 거래의 유통망이 되고는 있지만 암표 거래 때문에 본인들이 이득을 취하는 것은 아니고, 공통으로 1차 판매 시장이나 2차 판매 시장이 다 같이 공연 시장의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지금도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협조를 해 주고 계시지만 지금 법상 너무 엄격하게 매크로와 상습·영업이 결합돼 있다 보니까 티켓베이 같은 데들에서 이 부분을 협조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법에서 매크로와 무관한 상습·영업에 대해서 저희가 제한을 하기 때문에 티켓베이도 이 의무화 조치를 근거로 해서 회원분들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라서 사실 비협조로 나올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정연욱 위원 동시에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논의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다는 금액이라는 게 0.1원도 오버하면 다 단속을 한다는 취지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한도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지금까지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다만 10

원이라도 높으면 대상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자진신고를 하거나 협조를 하면 면제해 줄 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정연욱 위원 단돈 10원이라도 올리면 무조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취지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장 김진희 지금 ‘상습·영업으로’라고 여러 의원님들 발의안 중에 사실 박수현 의원님 안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완화돼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되게 소액의 1회의 이벤트에 대해서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논의가 돼서 상습·영업으로 더 엄격하게 조금 더 좁혀진 것이고요. 상습·영업이라는 범위는 저희가 시행령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설정할 때 하겠지만 지금 합의된 안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3회 이상, 차액이 100만 원 이상, 아니면 원래 판매가의 5배 이상 이런 기준들을 김영란법에서 선언적으로 제한하되 그 기준선을 만들었듯이 저희도 과징금 부과 기준에서 상습과 영업에 대한 기준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습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본의 아니게 자기가 직접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조금 돈을 올려서 내놓는 그런 건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장 김진희 예, 지금 허용이 됩니다.

○정연욱 위원 허용된다는 취지지요?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장 김진희 예, 맞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장 김진희 예.

○소위원장 임오경 더 이상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암표 근절에 있어서 저희가 이 법안을 심도 있게 다루는 입장이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과징금을 50배로 한 것은 법사위에서 조금의 조정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소위에서 확정은 했고 상임위 통과를 하더라도 법사위에서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13건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0항까지 7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2.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 수립 의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고 종합대책에 따라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취지에 공감합니다.

4쪽입니다.

3. 저작물 예시에 언론저작물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4조에 따른 저작물의 예시에 언론저작물을 별도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언론기사 중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제외한 창작적 기사·논설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언론기사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언론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하에서도 언론기사는 일반적으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제외할 경우 저작권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어문저작물에 포함되며 기사에 첨부된 사진이나 영상은 각각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쪽입니다.

4.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의 접속차단 조치입니다.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가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해당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가 현행법상 유일한 대응 수단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실제로 접속차단 요구를 하기까지 길게는 약 3주의 기간이 소요되어 대응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에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접속차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차단 위법 시 배상청구 관련 특별한 경우 개별법으로 국가배상 책임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으나 개별법상 명시 규정 없이도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입법례에 따라 해당 조항 삭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접속차단 업무는 방심위에서 수행 중이므로 부처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하고 협의가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과 (구)방송통신위원회는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저작권법 위반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접속차단 업무를 수행 중이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17쪽입니다.

5.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모 확대 등.

현행법 제122조의6에 따라 저작권보호원에 20명으로 구성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를 두고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과 권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수를 현행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증원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의 누설이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불법복제물 등의 접속차단 조치를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수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고 심의위원이 심의 시 취득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 등의 기업정보, 민감정보 등을 유출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게 하려는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서 수정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수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비밀유지의무와 관련한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수정하고

별칙 규정을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비밀누설 등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것과 비교하여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불균형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별칙 규정이 있음을 고려할 때 처벌 규정 신설의 실익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21쪽입니다.

6.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 침해 간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불법복제물에 대한 링크 사이트의 영리적 운영 및 링크 게시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온라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된 목적, 영리성 요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개정안 내용은 이미 법원 판례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고 있어 개정 실익이 낮고 고의요건과 목적요건의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협소해질 수 있어 개정에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문체부는 수정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요건을 삭제할 필요가 있고 영리 목적으로 링크를 게시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을 근절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인터넷 사이트’와 ‘등’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24쪽입니다.

7.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현행법 125조에 따르면 그 이익을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의 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6조는 위 규정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 방지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또는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민사적 구제수단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서 수정 수용하고 있습니다. 타 지식재산권 분야와 같이 5배 배수 배상이 적절하며 배상액 산정 고려 요소는 진종오 의원안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8.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강화입니다.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재산권과 비교하여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 예방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전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32쪽, 별칙 내용 중에서 제2호 법원의 비밀유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부분은 특허법 등 입법례를 고려할 때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9. 불법복제물 수거·폐기·삭제 관련 현장조사 근거 신설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불법복제물을 수거·폐기·삭제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하여 서류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수거·폐기·삭제·출입·조사·서류열람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별칙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복제물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수정 수용하고 있습니다. 불법복제물을 발견한 때 수거·폐기·삭제하는 행정상 즉시 강제에 관한 것으로 서류열람 등을 위한 행정조사는 이와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위반에 대해서도 별칙이 아닌 과태료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40쪽에는 부칙이 있습니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장님, 지금 전문위원께서 문체부 의견을 다 말씀을 해 주셔서요.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조은희 위원입니다.

불법복제물 단속 권한 및 기피자 처벌 규정 신설에 관해서, 저는 취지 자체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의 강제조사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수사기관의 활동과 경계가 모호해지는 부분은 없는지 또 조사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조사 범위 대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마련됐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저작재산권 침해 형사처벌 강화 부분과 관련해서 AI 무단학습, 불법 데이터 수집 등 침해행위라고 적용하기 힘든 사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적정 가이드라인은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및 연차 추진계획 수립 의무와 관련해서,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방침위·경찰·과기부 등 굉장히 많은 기관들과 밀접하게 관계돼 있는데 형식적 계획이 되지 않으려면 유관기관들과 역할 분담, 책임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건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문체부의 접속차단권 신설, 저작권 침해 사이트 긴급차단 제도 도입, 이 부분은 방침위에서 그동안 해 오던 건데 방침위와 협의는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저작물 추가에 관해서는 정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정 위원님께 맡겨 두고요.

그다음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구성 확대에 대해서는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민감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심의 기준과 판단 논리가 너무 깜깜이가 돼서…… 그런 우려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이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총 여섯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그중에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저작권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작권 보호 연차적 계획 수립할 때 방심위·경찰·과기부 등 유관기관 협조가 필요한데 이거 잘 얘기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차단권 신설하고 긴급차단하는 거에 대해서 방심위와 협의가 되었느냐 이 두 개를 묶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총리실의 국무조정실 조정으로 해 가지고 몇 달 동안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서 방심위에서 저희가 긴급차단권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했고 이 법에 방심위에서 반대하지 않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조은희 위원 제 질문은 협의했느냐인데 방심위가 양해했다는 게 아니고, 업무가 중첩이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저작권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중첩되는 부분들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 국민들에게 불법 저작물을 서비스하는 업체에 대해서,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서비스에 접속을 못하도록 하는 거를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저작권법으로 국내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하는 불법 행위라든지 또 해외에서 서버를 두고 해외 현지인에게 하는 행위들은 저희가 다 하고 있었는데 다만 접속차단,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불법물을 서비스하는 거에 대한 접속차단 권한만 저희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방미심위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느려지고 또 굉장히 공백이 심해서 저희가 11월 6일 국무조정실의 제2차장 주재 국장급 회의를 통해서 일단 긴급 차단과 접속차단을 빨리 할 수 있는 쪽으로 먼저 법 개정을 하면 그쪽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방미심위가 정상화돼서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완비되면 해외에서 제공되는 불법물 서비스에 대한 접속차단 권한들은 다시 방심위로 전환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요……

○조은희 위원 그러면 법안에 그 부대조건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법안에다 붙이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 가지고 하는 그걸 부칙에나 이런 데다 붙이는 예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요.

○조은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로 방심위는 가져가야 되겠다 그리고 문체부는 우리 거니까 그냥 계속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혼선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혼선이 없도록……

○조은희 위원 서로의 선의를 믿어 달라는 얘기잖아요. 어디도 한 구절도 넣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서면으로 저희가 마련을 해 놨습니다, 방심위 국장하고 국무조정실과.

○조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그다음에 형사처벌 기준 강화에 대해서 AI를 통해 가지고 저작 학습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침해가 있을 때 이거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걸 궁금해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AI 학습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어디까지가 공정한 이용이고 어디까지가 침해인지 저희가 공정이용 가이드를 11월 내에 초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연내까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일부 학습을 하는 부분들이 어디까지는 침해가 아닌지 이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담을 건데요.

○조은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AI 학습이나 불법 데이터 수집은 적정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걸 연내로 하겠단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11월 안에 하기로 정부 안에서 합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저작권보호심의위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분들이나 변호사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인데요. 방심위에서 하고 있는 거는 콘텐츠 내용이 반사회적이나 도박, 그러니까 콘텐츠 내용을 보고 심의를 하는데요. 저희는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라는 권리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정보를 보고 이게 적정한 권리를 가진 자가 올린 거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서만 보면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심의의 결이 좀 다르고 그리고 한 번 심의할 때 해마다 한 900여 건을 심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접속차단까지 하려면 그리고 좀 더 빨리하려고 하면 심의위원을 5명 정도는 더 늘려서……

○조은희 위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의문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비밀유지의무라는 조항이 있으니까 비밀·민감 정보는 비밀유지가 필요하지만 그러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깜깜이가 되지 않느냐 이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심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권리정보를 가지고 심의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에서 나와 있는 거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정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자가 아닌데 알려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조은희 위원 그러면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예, 투명성 확보됩니다.

왜냐하면 권리자의 신고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권리정보를 보고 심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박수현 위원님.

○조은희 위원 다른 부분이 더 있어요. 제가 한 여섯 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세 가지 다 말씀드렸는데……

○조은희 위원 아까 조사 범위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기억이

없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보호과의 특사경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업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수거, 폐기, 삭제 이런 부분들은 수사하면서 불법물임이 확실하게 되면 즉시강제 처분을 하는 부분이고요. 조사의 범위는 일단 여기가 불법물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건 혐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부나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조사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거를 분리해서, 즉시강제…… 폐기하거나 이런 거는 혹시라도 재산권에 대한 침해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데 거기에 수사권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방해를 한다라고 하면 벌금을 주는 거고 조사에 대한 부분들은 장부에 대한 조사, 권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장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조은희 위원 그러면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그런 오남용 사례는 없을 거라는 얘기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예, 맞습니다. 저희가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사경, 수사권을 가진 직원들이 가서 하는 부분들이고 조사에 대한 부분들은 질서에 대한 거니까 그건 수사권이 없더라도 조사를 하러 들어가는데 증표를 보이고요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은희 위원 그러면 조사 범위나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 기준이 있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불법복제물 등의 접속차단 조치와 관련해서 김교홍 의원님께서는 개정안을 통해서 긴급 차단 조치로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는 데 대하여 문체부는 그 수정안에서 개별법상 명시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른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개정안에서 이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을 수정안으로 내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규정된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 이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속차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관련 개정안에도 다 들어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 그다음에 신속성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개정안이다 보면 적어도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별도로 여기서 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의견에 동의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 문제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회복 차원에서 국가배상 책임 규정을 여기서 재차 강조할 필요도 있다라는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교홍 의원님 안에 동의를 하면서 문체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차 강조할 측면에서 삭제 수정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로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법으로도

충분히 김교홍 의원님 안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강조하는 의미에서 여기다 넣어서 같이 가도 저는 법의 실효성 확보에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연욱 위원님.**

○**정연욱 위원** 지금 저희가 저작권 문제를 얘기할 때 불법복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치는 시점의 시대마다 어느 시점마다 매체가 담당하는 영역이 다 다르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벌어지는 AI라고 지금 얘기하는 새로운 매체 환경에 도래했을 때 우리가 대처하는 방식이 과연 과거와 같은 형태로 그대로 이어 갈 것인지. 지금 단순한 학습 수준이 아니라 창의적인 수준으로 나가는 AI 시대 환경에 맞게 과연 이 저작권법이 대응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짚어야 되는데 지금 문체부가 접근하는 방식은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항상 문제가 없다는 식의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토대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언론저작물을 얘기하느냐, 어문저작물을 얘기하느냐 이런 식의 구분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일부 논리도 있으시겠지만 과연 사실 전달이 아닌 기사나…… 사실 전달이 대개 보고나 그다음에 간단한 인사 내용 정도 전달하는 거를 새로운 뉴스로 보존할 가치가 없다는 건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부분을 넘어서는 다른 영역에서 기사와 칼럼이라고 명시만 되어 있는 어문저작물의 원 오브 템(one of them)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과연 지금 신문과 방송, 현업단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깊은…… AI 시대에 맞는 저작권의 문제를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약간 문체부가 너무 안이한 게 아닌가.

실제 언론 현업단체들이 느끼는 고민은 각종 인터뷰, 각종 보도자료 그리고 각종 해설, 여러 가지 형태의 뉴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기사와 칼럼으로 뭉뚱그려 갈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문체부 설명을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언론 기사의 ICR 언론저작물이라는 게 지금 상당 부분 챗GPT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반응 자체는 대개 이런 형태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을 토대로 단순한 매체, 활자화되는 것도 그렇지만 당장 영상 형태로 나가는 것들이 전부다 재가공의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그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약간의 변형이 이루어졌을 때 기본 소스 자체를 무시해 버리고 그냥 간다는 것이 그동안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모든 매체가…… 네이버 포털이 들어설 때 과연 포털이 이렇게까지 공영화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언론사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문제를 구글처럼 얘기했다가 포털이 들어서면서부터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저작권 문제가 희석돼 버렸습니다. 챗GPT는 그런 영역을 다 초과해 버리고 있습니다. 아예 영역 자체가 없어졌어요.

과연 그런 부분까지를, 문체부가 어문저작물 하나로 다 이걸 원 오브 템으로 집어넣어서 감당할 수 있다? AI 시대에 지금 증가하는 속도가 초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걸 기존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감당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게 과연 AI 학습 변형, 환경의 변화 속도를 감당할 수 있다고 지금 장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대적 환경 변화 속에서

과연 어떤 부분까지 특정해서 분명하게 나가야 될 부분들을 뚱뚱그려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모든 부분에…… 저희는 직접 신문과 방송 협업단체들의 얘기를,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제기하는 겁니다.

이게 넓게 보면 앞으로 몇 가지 카테고리로 갈 사항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음악, 영상, 미술 지금 보호하는 체계를 넘어서는 단계로 AI 시대에 범위가 넓어질 것인데, 혼행 법령 조항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역까지 갈 텐데 제가 들어 보니까 이게 지금 급하지 않고 나중에 천천히 보면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문체부가 입장을 밝히시는 것 같은데 보면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분명히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협업단체들과 술한 얘기를 거쳐서 반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 임오경 박수현 위원님.

○박수현 위원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지금 언론저작물을 저작물의 예시에 추가하자는 정연욱 위원님의 안, 매우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이렇게 언론저작물의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이나 이런 통계가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송을 통해서 혼행법으로 저작권이 보호된 예시가 있는가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일단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언론저작물이 AI 학습데이터 관련해서 가장 많이 계약하려고 하는, 가장 도드라지게 앞에서 있는 저작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저작물에 대해서는 누구와 콘택트를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학습데이터를 별크로 사겠다라는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언론저작물이 저작권으로서 보호가 되고 있는 저작물이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예가 될 수 있는데, 이번에 네이버가 언론사들에게 피소를 당한 부분들도 결국은 언론저작물이 저작권으로 지금 혼행 저작권법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연욱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그리고 박수현 위원님께서도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다 충분히 알고 있고요. 최대한 새로운 AI 시대에 맞게끔 빨리빨리 빨리 빠르게 침해 대비를 위한 가이드를 마련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보호기간이나 특례규정이 상이하여 적용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던 문화부의 답변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과는 논리적으로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이게 다른 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넣어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앞서 박수현 위원이 완결적 구조의 강조의 의미로서 수용하듯이 이 부분들도 그 논리로도 수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국장님 답변한 논리로도 수용이 가능한데, 지금 4쪽에 문체부 신중 검토 하면

서 저작물의 종류별로 권리 보호기간이나 특례규정이 상이하여 적용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과 정면적으로 충돌해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행 저작권법상으로도 언론저작물이라고 표현되는, 언론저작물에는 글로써 쓰인 어문 형태의 기사나 칼럼 이게 대표적인 거고요. 인터뷰 자료도 독특성·독창성이 인정되면 당연히 저작물입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사진저작물로 인정이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송 프로그램에서 언론, 뉴스 보도를 하는 부분들은 방송영상 프로그램으로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체계하에서 언론저작물은 나타내는 형태에 따라서 각각 다 인정이 되고 있는데 방송저작물인 경우에는 다른 저작물과 달리 저작자의 생존과 사후 70년 규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공표 후 70년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다 보고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체부도 정연욱 위원님이나 박수현 위원님, 양문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AI 시대에 이 언론저작물의 저작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23년부터 수십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논의하고 있는데 솔직히 전 세계적으로도 생성형 AI가 나온 다음에 이것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화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TDM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저도 정연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박하고 그래서…… 관계부처 회의를 나가면 과기정통부, 중기부, 방송통신위원회 전부 문체부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저작권을 풀어 주고 싶어 하는 게 AI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부처들의 마음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공정한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 이것을 11월에 만들면 이것도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일본에서도 저희를 주시하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에서도 한국이 어떻게 만드는가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한번 봐 주시고.

그다음에 언론에 대해서도 정연욱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작권법의 관례에 따르면 이게 다 보호가 되고 보호기간이 좀 달라서 체계의 문제가 되는데 언론이라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이 개정안에다가 언론저작물을 넣기는 지금 현재 저작권법의 수준이 못 따라가고 있다. 그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정부 측의 고충도 이해를 하는데요.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님이 언론저작물을 저작물 예시에 추가하자는 것은, 저는 반드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입법례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AI 3대 강국으로 간다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보호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남을 따라가고 AI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선도하겠다면 그게 언밸런스지 않습니까?

저는 현재 정부 측의 기사에 첨부된 사진이나 영상은 각각 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안이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든지 해서 대안을 찾아서 가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임오경**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주셨고요. 현재 언론저작물은 내용이나 형식에 따라서 어문·사진·영상 저작물 등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정부 측 설명도 다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거나 앞으로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저작물 예시 규정을 계속 확장해야 할 경우 정부 측에서도 이러한 패러다임에 의해서 새로이 등장하는 매체나 산업 환경에 대해서 빠르게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정부 측의 의견을 들었을 때 언론저작물이라는 별도의 정의를 신설하는, 독립적으로 분리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드립니다.

정연욱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박수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소위원장 임오경** 예.

○**박수현 위원**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조은희 위원** 서로 많이 다른데요. 저는 보류하자고 얘기했고, 통과시키자고 얘기했고……

○**박수현 위원** 지금 보류하시자는 것 같은데요.

○**조은희 위원** 통과시키자고 그러시잖아요.

○**소위원장 임오경** 아니, 언론저작물 부분에 있어서만.

○**박수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위원장님 말씀을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일단 제 의견은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님의 문제의식과 지적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는 정말 심도 있는 토론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 측의 입장을 보면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단편적으로 성의 없는 답변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정연욱 의원님 안은 보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함께 토론해 보고 논의하는 장도 한번 마련해 보고 다음번에 나왔을 때 정부 측과 그냥 단순하게 이런 정도의 답변이 아니라 함께 논의해 볼 토론회도 마련해 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연욱 위원님의 문제의식을 숙성시키고 연구해서 다음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세계에 사례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를 필요는 없지요. 우리가 세계의 사례가 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보류하고 정부와 함께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는 준비·토론 이런 것들을 한번 기획해 보자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문석 위원** 참 궁색한 표현이었던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 사례가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궁색한 표현이었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보류와 숙고라는 영역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나온다고 했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양문석 위원 일단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추이를 현실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입법으로 갈 건지, 안 그러면 가이드라인으로 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전 단계에서 방마다 보고를 한번 해 주시든지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세미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절차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연욱 위원님.

○정연욱 위원 당장 제 의견을 강행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저도 현장에서 언론 활동을 했던 입장에서 주변에 있는 많은 현장 취재 현업단체들과 얘기를 해 보니까 나온 결론이지만 정부 부처의 여러 가지 고민을 외면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인터넷 환경이라는 게 도입되면서 생겼던 이른바 뉴스 보도의 저작권 문제가 처리되는 과정들에서 현업단체들은 약간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새로운 AI 시대를 맞는 환경에서, 그 속도보다 더 급속도로 변하는 시대적 환경에서 과연 저작권 문제가 제대로…… 이것은 손을 쓸 수 없는 시점까지 가 버린 거지요.

차관님이나 국장님이 보시기에 하루 저녁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급진전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정연욱 위원 과연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몇 가지 기준으로 보호할 수가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까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 얘기처럼 궁색한 답변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게 카테고리를 더 넓힌다고 과연 충돌이 되는 사안인지, 더 정치하게 규정을 세워서 나가는 것이 시대적 요구에 더 부응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랑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지금 우리 시대적 요구에도 부합하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점 때문에 정부의 더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 부분을 과할 정도로 대처하는 것이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칫 네이버 포털에 모든 뉴스 보도가 회돌리는 사례가 또 생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문체부가 주무부처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 잘 경청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 임오경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의 문제점이 절대 아닙니다. 변화되는 환경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 측에서 먼저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그리고 제19항과 제20항 총 6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차관님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부 측 준비되셨습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준비됐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및 제22항 2건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목적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전시 목적 외에 조사·연구 목적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국외 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유산청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수출은 예외 없이 전면 금지하려는 입장인데 개정안 제27조제1항 단서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국외 전시 및 조사·연구 목적의 수출이 가능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으므로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반출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국보·보물 또는 민속문화유산, 일반동산문화유산은 국외 전시 목적 외에 조사·연구 목적으로도 국외 반출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전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3.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장에게 권한 위임 협용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유산청장이 이 법에 따른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데 입법의 의의가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청 소관 다른 법률에서도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전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2건 모두 수석전문위원이 제기하신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님.

○ 박수현 위원 본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해외 기관에서 조사·연구 가치가 높은 우리 근현대 문화유산의 연구 요청을 할 경우에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청장의 허가하에 반출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또 국가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전시 목적 같은 경우에는 워낙 조심해서 여러 가지 우리 문화유산을 다루겠지만 조사·연구, 연구 목적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시와는 수준이 다른 환경에서 취급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분실이나 훼손이나 이런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전시 목적과 조사·연구 목적의 차이에서.

이에 대한 염려는 해 보셨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무슨 대비책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지금 사실 등록문화유산보다 높은 단계의 규제를 하고 있는 국가지정유산 같은 경우에도 조사·연구 목적으로 지금 반출을 허가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등록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도 단순 전시보다는 조사·연구할 경우에는 해외에 가지고 나가서 연구나 조사하다가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어떤 조사인지, 어떤 연구 계획인지를 철저하게 보고, 나가기 전에 또 유물 상태를 정확하게 사진을 찍고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변함이 없도록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해서 조사·연구 목적으로 가더라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수현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회복 조치에 대한 무슨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조치를 안 합니까? 준비를 안 합니까?

○ 국가유산청문화유산국장 이종희 문화유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출 허가 신청을 하는 기관이 조사·연구를 실제로 진행할 기관과 계약을 하고 저희한테 허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허가 신청의 내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박수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소위원장 임오경 조은희 위원님.

○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법안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완을 해서 통과를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자료 8페이지 보면 아직까지 국가등록유산의 국외 반출 건은 전시를 목적으로 한 경우 2건만 확인됩니다.

조사·연구 목적을 위한 국외 반출 협조 요청이 얼마나 됩니까?

○ 국가유산청문화유산국장 이종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된 등록유산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2건밖에 없었지만 등록유산의 범주가 근현대 유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지정유산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올해 10월 경에 이미 작년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 조은희 위원 아니, 2건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저의 진짜 질문은 국외 조

사·연구 목적을 위한 반출 협조 요청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등록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건도 조사·연구 목적으로 허가 신청을……

○**조은희 위원** 없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받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조은희 위원**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21대 국회에서 문화유산법과 자연유산법은 이미 개정을 했어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래서 이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아는데, 개정 이후 실제 수요가 있었습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러니까 일반 국가지정문화유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은희 위원** 문화유산법과 자연유산법에 의해서…… 이거를 개정했잖아요, 21대에. 실제로 개정 이후에 수요가 있었냐고요.

○**국가유산청문화유산국장 이종희** 24년 2월에 개정되었는데요. 개정 이후로 조사·연구 목적을 특정해서 신청된 바는 아직 없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한 반출이 필요한 사유는 뭐니까?

○**국가유산청문화유산국장 이종희** 저희 고미술계나 근현대문화예술계에서 이런 수요들이 있으니 정부가 그것에 대해 준비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조은희 위원** 수요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은 해외 유수 기관만 갖고 있는 초정밀 분석장비 또는 보존처리기술 활용이 필요해서 이걸 하겠다는 겁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보존처리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갖고 있는데요.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개정을 통해 발생할 법익이 뭔지 구체적으로 사유를 들어 주세요.

○**국가유산청문화유산국장 이종희**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저희에게 조사·연구 목적으로 반출을 신청하는 기관들은 본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과 저희 유산들을 비교·연구하는 데 주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생각이지요. 아직 사례도 없고 요청……

그런데 저는 여기에 리스크가 따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사·연구 과정에서 문화유산의 직접적 접촉이 필요하거나 시료 채취가 수반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외 조사·연구 과정에서의 훼손 가능성에 대해서 책임과 보험 문제는 어떻게 규정합니까? 또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될 국외 기관이 적정 규모의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도 따져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런 부분은 허가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계획서를 보고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맡겨 달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다 할게, 맡겨 줘. 그런데 디테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에도 다 ‘우리한테 맡겨 주세요. 우리가 할게요’ 이렇게 돼 있나요? 가이드라인이 뭡니까?

좀 더 보완해서 오십시오.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유산청장이 허가하면 반출할 수 있는데 어떤 사례가 있을 수 있나, 그쪽에서 비교·연구하려고 그러면 비교·연구하면서 보험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시료 채취 통해서 훼손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 법안에 그런 걸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잖아요.

고민했습니까?

○**국가유산청문화유산국장 이종희** 일단 지금 이런 신청들은 해외에 있는 기관이 저희 국가유산청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유물의 소유자와 외국에 있는 해당하는 기관이 서로 계약을 맺고 양쪽에서 빌려 가지고 하는 목적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하고 보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양문석 위원** 국장님, 그 이야기는 충분히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유산청에서 구체적인…… 이게 정부입법안이잖아요. 정부입법안이면 이 정부입법안의 충분한 근거, 사례를 지금 제시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수요도 실질적으로 없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입법안을 가지고 왔고 충분히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고. 그러면 이걸 왜 지금 당장 해야 될까라는 시급성이나 긴급성도 못 느끼겠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필요의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설명을 못 해내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지난 1년 동안에 유사한 입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례도 없고 통계도 없고. 지금 상황이 딱 그 수준이에요, 지금 답변하는 수준이.

이것은 두 가지 문제지요. 여러분 두 분이 준비가 안 됐거나 안 그러면 실제 이 필요성이 없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보류하시지요.

○**소위원장 임오경** 일단 저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차장님, 첫 번째 안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이와 비슷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소위원장 임오경** 그것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 당시에도 조사·연구 목적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반출을……

○**소위원장 임오경** 가능하도록……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가능하도록 한 거고……

○**소위원장 임오경** 그 당시에 국보·보물 또는 민속문화유산, 일반동산문화유산을 국외 전시 목적 외에도 조사·연구 목적으로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허가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소위원장 임오경** 그런데 본 개정안은 개항기 전후부터 건설, 제작, 형성된 50년이 지난 개인 소장한 등록문화유산 또한 국외 전시 목적 외에도 조사·연구 목적으로 국외 반출을 허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수출은 여전히 전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수출은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따라서 반출 허용 범위 확대와는 별개로 수출금지 규정이 실효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만 위원님들도 유산청에 맡길 것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소위원장 임오경**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을 잘하셔야지……

○**박수현 위원** 저는 질문의 취지에 이어서……

 지금 국보·보물이 있고요.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박수현 위원** 그다음에 민속문화유산이 있고 일반동산문화유산이 있고 등록문화유산, 이렇게 4종이 있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중에서 등록문화유산만 제외한 국보·보물, 민속문화유산, 일반동산문화유산 이 3종은 이미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시뿐만이 아니라 조사·연구 목적으로도 반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등록문화유산만 그렇게 법률 개정이 안 돼서 현재 조사·연구 목적으로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 법률 개정을 하고자 개정안을 낸 것이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맞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법령 개정상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개정안을 낸 취지도 있는 것이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박수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높은 등급의 규제를 받고 있는 국가지정 보물이나 국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사·연구 목적으로도 반출을 허가할 수 있도록 법적인 체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최근, 그러니까 근현대유산의 등록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목적으로는 반출 허가를 할 수 없도록 지금 법이 돼 있기 때문에 법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이 나온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동의를 드린 겁니다.

 다만 그런 조사·연구 목적으로 반출됐을 때 안전하도록, 훼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의 설명이 오늘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훨씬 더 높은 단계에서도 법률에 허용돼 있는 상황이면 낮은 단계에 있어서의 보완이나 그다음에 보존의 문제나 그다음에 각종 요구 사항들은 굳이 이 공간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명확하게 법의 균형, 법조문 정리를 위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맞습니다.

○**양문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발언할 때는 손 들고 위원장님의 허가를 득하고 발언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소위원장 임오경** 예.

○**조은희 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등록유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에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국보·보물, 민속 여기가 다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한다? 지금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유사한 취지로 개정한 문화유산법과 자연유산법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한 훼손 가능성, 책임과 보험 문제, 적정 규모와 관리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나,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이게 급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가등록유산의 국외 반출 전시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도 2건만 확인되기 때문에요. 이게 요청도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미비한 것을 급하게 다른 게 됐으니까 이것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안이한 태도 아닙니까? 이걸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 국보·보물, 민속문화유산, 일반동산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국외 전시 목적 외에도 조사·연구 목적으로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허가가 되어 있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답변을 재차 다시 들었고 또 박수현 위원님도, 저도 지금 질의를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등록문화유산만, 근현대유산만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법을 통해서 저희가 함으로써…… 지금 규정이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등록문화유산만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을 통해서 같이 선상을 맞춰 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은희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건 정부 측의 쉬운 설명이고요. 본 위원이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고 있잖아요.

조사·연구 과정에서 문화유산의 직접적 접촉이 필요하거나 시료 채취가 수반될 수 있나요? 그러면 국외 조사·연구 과정에서 훼손 가능성에 대한 책임과 보험 문제는 어떻게 규정하느냐, 또 국외 기관이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될 때 적정 규모와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따지느냐, 그리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나, 아무 대답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른 법안이 됐으니까 이것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자동으로 뚝딱, 이것 자동 판매기입니까, 법안이?

○**소위원장 임오경** 기존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련돼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등록문화유산은 좀 확대하자는 거잖아요. 그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존에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 부분은 담당 국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문화유산국장 이종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정확

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반출 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에는 반출 허가 신청을 한 국내의 기관이 적정한지, 그 상대방이 되는 해외의 기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보고 있고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나가는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전부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혹시 시료 채취 등이 들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당해 유산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현장에 가서 나가기 전에 유물의 상태를 완벽히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들어오는지까지를 종료된 뒤에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책임과 보험 문제는 어떻게 되지요?

○**국가유산청문화유산국장 이종희** 보험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신청한 기관과 외국에서 수요로 하는 기관 사이에 보험을 들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을 들고 반출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관 그리고 해외의 해당하는 기관 그리고 계약 내용, 사업의 목적과 개요 그리고 유물의 상태 등을 다 확인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훼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들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그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서 외국의 수요로 하는 기관이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국외 기관이, 조사·연구를 하는 국외 기관이 적정 규모의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따질 건데요?

○**국가유산청문화유산국장 이종희** 보통 유수의 기관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유수의 기관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기관이 있을 때에는 그 기관의 개요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리고 문화유산법과 자연유산법에는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지금 담당 국장이 설명한 것이 지정유산에 대해서 반출 허가 할 때 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이드라인을 똑같이 등록에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조은희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본 위원은요 아직 이 입법은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디테일이 결여 돼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유산청은 처음에 지적했을 때 술술술술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부법안이잖아요, 의원입법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입법을 상정할 때 좀 더 꼼꼼히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22항에 관련해서는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장님, 잘 들으셨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법안인 만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만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런데 처음에 질의를 하셨을 때 정부 측에서 너무 간략하게 이해가 안 되는 답변들을 좀 내놓으셨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및 제22항, 2건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최보근 차장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 위원(6인)**

박수현 손솔 양문석 임오경 정연욱 조은희

○**출장 위원(1인)**

이기현

○**첨가 위원(1인)**

조계원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김용규

입법심의관 김충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예술정책관 이용신

저작권국장 정향미

국가유산청

차장 최보근

문화유산국장 이종희